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수교육훈련기관 지정 근거 및 최대 인정 학점 제한 예외 규정 마련〉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736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11.
3. 회부연월일 : 2026. 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교육훈련기관의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되 학습자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대 인정학점 제한으로 인해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모든 과목을 이수할 수 없어 여러 교육훈련기관의 과목을 교차 수강해야 하는 등 학습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학습자들이 있고,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점이수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습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인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우수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한 교육훈련기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평가·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되는 최대 학점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6조의3(우수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습자의 평생 교육 기회 확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우수 교육훈련기관(이하 “우수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평가·인증할 수 있다.</u> <u>② 교육부장관은 우수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u> <u>2. 제1항에 따른 우수교육훈련기관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u> <u>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조(학점인정) ①·② (생략)	제7조(학점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u>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인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우수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2. 검토의견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자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력 인정 및 학위 취득을 연계·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동법 제3조¹⁾는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²⁾하도록 규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정하고 있음.

-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학점인정의 기준에 관하여 [별표3]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별표3]에서는 학습자가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최대 기준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사과정 105학점, 전문학사과정(2년) 60학점, (3년) 90학점임.

-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①특정 교육기관에서 대부분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사실상 ‘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②여러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학점 취득을 유도하여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한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최대 인정학점 제한으로 성인학습자들이 여러 교육훈련기관의 과목을 교차 수강해야 하는 등 학습 설계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 이수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수강을 할 수 밖에 없어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 이에 개정안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원격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총 386개, '26.3월 기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의 경우에는 최대를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인정 기준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학습자가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학위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 및 성인학습자의 학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됨.

- 특히, 개정안은 우수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학점 인정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특정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집중적으로 이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담보된 기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현행 법령상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를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위취득을 위한 전체 학점의 약 75% 정도 수준으로, 이미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의 상당 부분을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수준인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학점인정 범위 및 졸업학력 인정기준 학점>

구분	교육훈련기관 최대인정학점(A)	졸업학력 인정 기준 학점(B)	비율(A/B)
학사	105	140	75%
전문학사(2년)	60	80	
전문학사(3년)	90	120	

□ 아울러, 현행 「고등교육법」 상 ‘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학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으나, 동 개정안에 따라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인증받은 교육훈련기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 전체를 이수할 수 있게 되므로, 대학과 대학이 아닌 기관과의 규제의 일관성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함.

- 참고로, 현재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총 386개로 그 유형을 보면 대학뿐만 아니라 원격기관, 직업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다양함.

<교육훈련기관의 유형>

구분	대학 등	원격기관	직업 훈련 시설	정부· 지자체 ·군	평생 교육 시설	학원	기타	계
기관 수	163	104	51	37	16	8	7	386

자료: 교육부('26.3월 기준)

□ 한편,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면 단일 기관에서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행 학점은행제도는 ‘개별 학습과정 단위’의 평가인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우수교육훈련기관은 기관 단위의 인증이라는 점에서, 평가·인증의 요건과 절차를 사전적으로 엄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인증의 요건은 제도 운영의 핵심사항이므로 입법 형식에 있어서도 개정안과 같이 평가·인증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에서 구체화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현행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설립 기준 비교>

구분	대학설립·운영 규정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기관(출석) 기본·운영 여건
교사	·인문사회 : (대학) 12m² , (전문대학) 8.4m²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 : (대학) 14m² , (전문대학) 9.8m² ※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이론강의실 : 학습자 1인당 1m² ·예체능·실습실: 서울 학원 조례 기준 ·행정실 확보 ·교·강사 지원시설(연구실, 휴게실 등) 확보 ·학습자 지원시설(휴게실, 세미나실 등) 확보
교원	·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 20명 (대학 1/5, 전문대학 1/2 범위 내에서 겸임·초빙교원 가능)	교원 기준 없음 → 학급당 학습자 수 규정 ·출석기반: 40명 ·원격기반: 200명 ※ 학습자 1천명 당 조교 1명
수익용기본재산	·대학 : 300억원 ·전문대학 : 200억원 ·사이버대학 : (학사) 35억원, (전문학사) 25억원	별도의 기준 없음 → 재정 건전성(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자료: 교육부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 교육부는 우수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시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준하여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시설, 교원, 강의당 학습자 수 등의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가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의 학습과정 등을 강화하고, 학습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선행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경북대 등 6개 대학은 평생교육의 취지가 훼손되고, 교육훈련기관의 ‘유사대학’으로 변질 우려, 교육의 질 저하 우려 등이 있어 개정에 반대 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는 학습자의 학습경로 선택권 및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통한 기관 관리 측면에서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며, 우수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학점 인정 제한 제외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
